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성주군 소속 무주택 공무원과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거주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기금조례 목적 및 재원조성 (안 제1조～제3조)

○ 기금의 존속기한 및 용도 등 기금관리 (안 제4조～제7조)

- 존속기한: 2024. 12. 31. 필요 시 연장
- 주택 매입(신축), 전세자금, 월세보증금 (이율 1%)

○ 대부자격 및 대부업무 위탁 등 대부업무 (안 제8조～제12조)

- 무주택 공무원
- 주택 소유자 중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할 예정인 공무원

○ 위원회 설치·운영 등 (안 제13조~제17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○ 예산조치 : 기금목표 40억원 조성을 위해 매년 10억원 출자

○ 규제심사 : 규제사항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

○ 입법예고 : 입법예고 실시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성주군 소속 무주택 공무원과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거주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,

○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기금의 조성과 존속기한 및 관리와 용도, 대부 자격과 대부업무 위탁, 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내 거주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정 업무의 효율성,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